



▶ **Separate Contract**

한 개의 건설공사에서 여러 개의 원청계약 중의 하나를 뜻한다. Independent Contract 라고도 한다.

▶ **Shop Drawing**

작업 또는 제작도면을 뜻하는 말로, 시공자(또는 그의 하청자, 제조자)에 의하여 준비되는 도면으로서, 이 도면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며, 수행된 작업을 기초로하여 수정된 최종도면을 As-Built Drawings 라 한다.

▶ **Short form Agreement**

미국건축사협회가 단순 소형공사용으로 제시한 계약 형태로서 계약일반조건과 도면, 시방서가 계약서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 **Site Investigation**

현장조사의 뜻으로 Site Survey 라고도 한다. 현장조사는 입찰시 입찰금액의 산정에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시공자의 부담이 된다. 현장조사는 대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a. 현장의 지형(Form and Nature of Site its Surroundings)
- b. 수리 또는 기후여건(Hydrological and Climatic Conditions)
- c. 공사의 범위(Extent and Nature of Work)
- d. 현장과 숙소의 위치(Means of Access to the

Site and the Accommodation)

시공자로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물리적인 약조건은 공기연장과 추가보상의 대상이 된다.

▶ **Site Plan**

건물의 위치와 치수를 나타내는 현장계획도면(a plan of construction site). Plot Plan이라고도 한다.

▶ **Special Hazards Insurance**

누수(leakage), 붕괴(Collapse), 수해(Water Damage), 기타 여러 물리적 손실(Physical loss)과 같은 재산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운송중인 자재에 대한 위험까지도 부보하는 특별위험보험이다. 공사현장의 시공사의 사고에 추가적인 위험(Additional Perils)까지 부보한다.

▶ **Special Provisions**

계약의 일반조항(General Conditions)이나 보충조항(Supplementary Conditions)과는 달리 특수공종의 수행조항을 규정한 것이며 Special Condirions 라고도 한다.

▶ **Special Risks**

특수위험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이해되며 Force Majeure(프랑스어이며, 영어로는 Superior Force 에 해당한다) 또는 Excepted Risks 등으로 불리운다. 또한 영국 관급공사계약서에서는 Accepted Risks로 표

현하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발주처의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우디의 표준계약서에는 전쟁, 적의 침공, 발주국내의 군사적인 행위 등과 유사한 상황의 발발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진, 폭동, 파업, 화재나 홍수 시에도 Special Risks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영국 관급공사계약서)

①가시공 공사에 대한 미불금 ②현장이 기투입된 자재와 투입예정 자재의 대금 ③전공정의 완공을 전제로 기투입된 비용으로 여타항목의 지불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용 ④장비 또는 시설물의 조기철수로 인한 비용 ⑤인력의 조기철수로 인한 비용

이 중 일반적으로 ②③④⑤ 항은 ①에 대하여 "Termination Costs"라고 한다. 발주처의 지시나 Force Majeure로 인한 Termination에서는 "공사대금 + Termination Costs"가 청구의 대상이 된다.

### ▶ Specification

시방서를 뜻하는 말로 줄여서 spec으로 쓴다. 공사 범위, 사용자재, 설치방법, 작업의 질 등을 상세히 나타내는 계약 서류의 하나이며, 통상 작업도면과 함께 이용된다. General Spec과 Technical Spec으로 분리된다.

### ▶ Statement at Completion

현장인수증명서(Taking-over Certificate) 또는 완공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가 발급되고 난 뒤 일정기간(FIDIC에서는 84일)내에 시공자는 아래사항이 기재된 소정의 명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게 되는 바, 이 명세서를 Statement at Completion(준공명세서)이라고 한다.

- a. 현장인수증명서 또는 완공증명서의 발급일까지 수행한 공사의 최종금액
- b. 대 시공자 미불금액
- c. 향후 도래할 대 시공자 예상지불금액

준공명세서의 내용은 추후 최종명세서(Final Statement)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다.

### ▶ Statutory Bond

형식과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증권

### ▶ Stipulated Sum Agreement

특정금액이 계약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지불임을 규정 한 계약(a contract in which a specific amount is set forth as the total payment f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이는 미국건축사협회(AIA)가 제시한 Lump-Sum Agreement의 근간이 된다.

### ▶ Stop-Go Policy

상황에 따라 긴축과 완화를 교체하여 시행하는 경제 정책. 발주처에서 시공자의 통제수단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용어로 Carrot-and-Stick Policy라는 것도 있다.

### ▶ Streamlined Specification

공사에 대한 적정기술자료를 포함하지만 축약형으로 작성되는 시방서로서, 1939년 H.W.Peaseles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는 이미 합의되었다거나 관습적인 공법에서는 편리하지만 복잡한 공법에서는 적용에 논란이 있다.

### ▶ String Development

도심에서 외곽으로 뻗어가는 도로를 따라 단일 건물 군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확장현상을 뜻하며 Ribbon Development라고도 불리운다.

### ▶ Strip Building

최소한의 부지를 이용하여 길게 병렬로 건축한 다세대용 주택.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